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3. 5 선고 2023가단5695 판결 [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등]

전 문

원 고 A은행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

변 론 종 결 2024. 1. 9.

판 결 선 고 2024. 3. 5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B은 110,152,789원 및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
값는 날까지 연 10.5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C은 망 E(F생)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
7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.항 기재 돈 중 66,091,673원 및 그 중 60,000,000원에 대하여
2023. 7. 13.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0.5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피고 D은 망 E(F생)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
48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.항 기재 돈 중 44,061,115원 및 그 중 40,000,000원에 대하여
2023. 7. 13.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0.5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B은 5,282,764원 및 그 중 4,955,319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C은 망 E(F생)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3,169,658원 및 그 중 2,973,191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피고 D은 망 E(F생)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2,113,056원 및 그 중 1,982,127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원고의 피고 C,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항 및 원고에게,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7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 중 66,091,673원 및 그 중 60,000,000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.57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

48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 중 44,061,115원 및 그 중 40,000,000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.57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주문 제2의 가항 및

원고에게,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,169,658원 및 그 중 2,973,191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피고 D은

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,113,056원 및 그 중 1,982,127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는 2016. 9. 26.경 원고로부터 5억 원을 2019. 9. 27.을 만료일로 하여 대출받았고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, 소외 망 E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1억 2,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하였다. 나. 피고 회사는 2000년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, 망인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(이하 '이 사건 신용카드'라 한다) 이용과 관련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 다. 망인은 2022. 10. 6. 사망하였고, 피고 C은 3/5의 비율로, 피고 D은 2/5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 피고 C, D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, 위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D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. 라. 한편, 2023. 7. 12.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100,000,000원, 연체 및 미수이자 합계 10,152,789원 합계 110,152,789원이고,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무는 원금 4,955,319원 연체료 327,445원 합계 5,282,764원이다.

[인정근거] 피고 회사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)피고 C, D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,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110,152,789원 및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.5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피고 C은 7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 중 66,091,673원(= 110,152,789원 × 3/5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 및 그 중 60,000,000원(= 100,000,000원 × 3/5)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.57%의 각 비율로 계산한

자연손해금을, 피고 D은 48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.항 기재 돈 중 44,061,115원(= 110,152,789원 $\times$ 2/5) 및 그 중 40,000,000원(= 100,000,000원 $\times$ 2/5)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.57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5,282,764원 및 그 중 4,955,319원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자연손해금율인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,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C은 위 돈 중 3,169,658원(= 5,282,764원 $\times$ 3/5) 및 그 중 2,973,191원(= 4,955,319원 $\times$ 3/5)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, 피고 D은 위 돈 중 2,113,105원(= 5,282,764원 $\times$ 2/5)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,113,056원 및 그 중 1,982,127원(= 4,955,319원 $\times$ 2/5)에 대하여 2023. 7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자연손해금율인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, D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용희